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2. ~ 11. 1.) 예정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가족친화교육 및 컨설팅 등 가족친화 관련 분
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
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2조(「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
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제3조(「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4조(「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5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한다.

8.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9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9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

교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기계설비법 시행령」의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학사”를 “전문학사, 학사”로 한다.

제8조(「기술사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제9조(「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제10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식품 및 농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농식품 관련 벤처·창업 및 기술 사업화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라. 농식품 및 농경제 등 관련 분야 이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농식품 관련 벤처·창업 및 기술 사업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11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전문인력의 지정요건란 제1호가목 중 “3년”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5년”을 “8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전문인력의 지정요건란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7년”을 “3년”으

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중 “학사학위”를 “전문학사학위”로 한다.

제13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조(「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5조(「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물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화학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계·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관련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6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2) 중 “법인”을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17조(「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련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제18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3) 담당자의 자격기준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3) 담당자의 자격기준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3) 담당자의 자격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또는 분석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폐기물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석면 관련 분석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19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양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교육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 ----- ----- ----- ----- ----- -----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 ----- ----- ----- -----.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

1) · 2) (생략) <u><신설></u> 나. (생략) 2. ~ 4. (생략) ② · ③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해당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u> 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전담 인력을 4명 이상 보유할 것 가·나. (생략) <u><신설></u> 다. (생략) ④ ~ ⑥ (생략)	제46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인이나 단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u>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u>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u>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1) <u>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u>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략)

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 기준 등)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인력”이란 해당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의 종류란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19조(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 기준 등) ①-----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u>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① (생략)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 ----- ----- -----.
1.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연구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1.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다·라. (생략)	라·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u><신 설></u> 2. · 3. (생 략)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9 조제1호에 따른 기술 · 기 능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 이 4년 이상인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 다. (생략)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u>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연 락 처	(02) 2100 - 636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8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4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1484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5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4465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1365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6394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연 락 처	(042) 481 - 4187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5164